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966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C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가단5253844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21.
판 결 선 고 2026. 6.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부터 2026.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1.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제2항 중 '가. 기초사실'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 C를 포함한 제1심 공동피고들은 이 사건 저작물을 각색하거나 그대로 도용한 각본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드라마 제작을 추진함으로써 원고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는바,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0860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드라마 제작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불법행위를 하였는지를 본다. 이 사건 드라마는 제작하기 위한 준비과정만 있었을 뿐, 실제로 제작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드라마 제작을 위한 각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불법행위를 하였는지를 본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 측이 늦어도 2023. 10.경 'AF'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드라마 각본 'A G'(4부작, 125쪽 분량, 갑 제10호증)을 기초로 'AF' 각본(8부작, 194쪽 분량, 갑 제9호증)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각본의 플롯, 사건 전개, 캐릭터의 성격, 직업, 엔딩 등 주요 부분의 유사 정도 및 창작 부분의 정도, 각 각본의 분량 등을 고려해 볼 때, 'AF' 각본은 'AG' 각본을 기초로 한 2차적저작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C를 포함한 제1심공동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들은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배상 액수를 본다. 원고는 이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점(저작권법 제126조),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드라마<E>에 관한 저작권재산권 양도대가가 10,000,000원으로 정해진 점, 피고 측의 이 사건 침해행위는 영리 목적의 침해인 점, 원고의 작가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록상 불법행위일 이후임이 분명한 2023.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6.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이 일부 인용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현

판사 오성우

판사 황현찬